

고문 위로금

Q 당사의 임원이 퇴사후,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일신상의 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의 손
금인정이 가능한지요?

A 계약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위로금도 지급받는다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귀사가
원천징수후 지급하시면 되며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하도급 위반 매출대금 지연 이자

Q 하도급 조사로 인해서 고객으로부터 매출대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급이자를 수령하였습
니다.

하도급조사 대상은 2021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은 대략 32백만원이고 이를 영업외손익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적정한 계정이 있는지요?

혹시나 USGAAP 회계처리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A 매출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수령액은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2건

Q 세금계산서를 당월1일~31일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차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있는데
(1달치 거래)

이부분을 당월 1일~15일까지 발생분에 대해서 당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아울러 16일~31일까지 분은 정상적으로 차월에 발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럴경우 당월에는 지난달 한달치 + 15일분 에 대한 계산서 즉 2건이 발행이 되는것으로
되겠네요.

A 거래처별로 1억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15일의 기간동안만 합산하여 1일~15일분은 15일에 16일~30일분은 30일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 사용 문의

Q 본 원에서 처리하는 택시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택시비의 경우는 통상 사전승인을받은 후 교통비로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이나,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사전승인이 어렵고, 업무관련 출장이 아닌 귀가의 목적일 경우 현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택시비를 꼭 교통비로만 처리해야맞는것인지 아니면, 위와같은 사유로 복리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할지의 여부는 귀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되므로, 귀원이 판단하기에 여비교통비가 아닌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됩니다.

지입차 유류비 정산

Q 당사는 외부 지입차량과 계약을 체결하여, 월발생되는 지입료와 실제 운반하면서 발생하는 제비용(식대, 통행료)등의 증빙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운행거리 기준으로 이에 상당하는 유류비를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동 유류비 지원액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처리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A 지입차량과 계약 체결하여 유류비 포함한 총 발생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받기로 계약했다면 유류비도 포함시켜 처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